

조선시대 고신 문서와 관료 임명 제도

박성호(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고신 연구 경과
3. 고신의 주요 쟁점
4. 고신 연구와 고신 제도 연구
5. 맺음말

1. 머리말

고문서 연구 분야에서 '告身'의 조사 수집과 그에 대한 연구는 다른 고문서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전근대 관직 진출자에 대한 실증 자료로서의 유용성과 이미 활발히 연구된 중국의 고신 및 관료제 연구에 대한 성과 등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원본 문서의 수효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가 고신에 대한 후손들의 남다른 보전 노력 등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고신 연구가 활성화된 만큼 고신에 대한 논쟁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논쟁의 요점은 고려말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고신의 실체와 연속성에 대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教旨의 전신인 王旨가 고려말에도 존재했는가 하는 논쟁, 고려말과 조선초에 발급된 朝謝 문서를 고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본고에서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고신에 대한 연구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고신에 대한 연구가 고신 제도 연구에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2. 고신 연구 경과

정구복은 조선시대 고신은 문서의 성격상 근대의 사령장에 해당하고, 제도적으로는 고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며, 시기에 따라 혹은 관행적으로 官敎, 敎牒, 敎旨, 王旨 등의 이칭이 사용되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¹ 『경국대전』에서 공식적으로 '고신(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 문무관오품이하고신식)'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조선시대 정1품으로부터 종9품의 관직자에게 발급한 관직 임명문서는 고신으로 지칭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타당하다. 다만, 실록이나 문집 등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검토해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관교', '교첩', '교지', '직첩' 등의 용어가 보인다.² 용어 사용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

한국에 전래되고 있는 고신에 관한 연구는 크게 조선시대를 기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전의 고신은 남아 있는 수요가 매우 적기 때문에 문서한 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조선시대 고신은 개별 문서에 대한 연구보다는 고신의 제도사적 변화와 양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신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975년(고려 경종원년)에 발급된 金傅 고신이다. 이 문서는 원문서 형태로 전하지 않고 『삼국유사』에 전제된

¹ 정구복, 「조선조의 告身(辭令狀) 검토」, 『古文書研究』 9, 1996.

² 관교와 교첩은 조선 개국 초기 태조가 고신식을 개정할 때 1품에서 4품에게는 왕지 양식의 문서를 발급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문하부에서 왕명을 받들어 牒을 발급하게 하면서 전자를 '관교', 후자를 '교첩'이라고 지칭한 데서 유래하였다. (『태조실록』 1년(1392) 10월 25일 기사, 改告身式: 一品至四品, 賜王旨曰官敎, 五品至九品, 門下府奉敎給牒曰敎牒.)

형태로 전하고 있지만, 고려초기의 제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로는 木下禮仁, 장동익, 심영환 등의 연구가 있다.³ 원문서로 전하고 있는 고신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는 1216년(고려 고종 3) 慧謙 대선사에게 발급된 고신이고, 그 다음으로는 1344년(고려 충목왕원년) 申祐에게 발급된 고신이다. 핵심 고신에 대한 연구로는 장동익, 박재우 등의 연구,⁴ 신우 고신에 대한 연구로는 川西裕也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⁵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정구복은 조선시대 고신과 관련한 용어정리 및 법전 규정 등을 근거로 제도적인 내용을 개괄하였다.⁶ 심영환은 조선초기로부터 중기에 나타난 초서체 고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⁷ 유지영은 관직 임명 시 발급된 教旨를 대상으로 제도와 양식 변화를 상세하게 밝혔으며,⁸ 가와니시 유야는 조선초기의 官教, 즉 왕지와 교지 양식으로 발급된 고신을 대상으로 그 제도와 인장 등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규명하였다.⁹

3. 고신의 주요 쟁점

³ 木下禮仁, 「『三國遺事』金傳大王條にみえる「冊上父誥」についての 一考察」, 『朝鮮學報』 93, 1979; 장동익, 「金傳의 冊上父誥에 대한 一檢討」, 『歷史教育論集』 3, 경북대학교사범대학역사교육과, 1982;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9~52쪽; 박재우, 「고려시기의 고신과 관리임용체계」,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심영환, 「高麗 景宗元年(975) 金傳告身 分析」, 『서지학보』, 한국서지학회, 2007.

⁴ 장동익, 「惠謙의 大禪師告身に 대한 檢討」, 『韓國史研究』 34, 1981; 노명호 외, 앞의 책, 56~62쪽; 박재우, 「고려시기의 고신과 관리임용체계」,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⁵ 川西裕也, 「高麗末・朝鮮初における任命文書体系の再檢討」, 『朝鮮學報』 220, 2011, 117~119쪽.

⁶ 정구복, 「조선조의 告身(辭令狀) 검토」, 『古文書研究』 9, 1996; 고문서 용어풀이 : 고신(고신첩, 직첩, 관교, 교첩, 첩지, 첩지, 공명고신첩, 공명첩, 교지, 왕지, 교명, 고첩), 『古文書研究』 22, 2003.

⁷ 심영환, 「조선초기 초서 고신 연구」, 『古文書研究』 24, 2004.

⁸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 형식」, 『古文書研究』 30, 2007;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⁹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教文書様式の變遷 - 頭辭と印章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205, 200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된 고신 연구에서 크게 쟁점이 부각된 사안은 두 가지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말 관직 임명문서(고신)로 왕지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경북 의성의 아주신씨 집안에 세전되어 온 1344년(고려 충목왕 원년)에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신우 왕지가 출현하면서 논의가 과열되었다.

<자료 1> 1344년 신우 고신

王旨

申祐爲神虎衛

保勝攝護軍者

至正四年四月廿九日

[駙馬高麗國王印]

위 문서는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를 통해 사진 자료가 공개되었고,¹⁰ 이후 방송을 통해서도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자 고려말부터 이미 조선시대 왕지나 교지 양식의 시원이 되는 문서가 존재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견해와¹¹ 고려후기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¹²가 상충되었다. 고려후기 고신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어느 쪽의 견해가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가와니시 유야의 연구에서 이 문서의 양식이 전형적인 元代 문서 양식을 따랐고, 문서에 찍힌 인문이 원대의 八思巴 문자로 새겨졌으며, 인문은 '駙馬高麗國王印'이라는 사실이 소개되었다.¹³ 이를 통해 이 문서는 진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고려말 조선초의 고신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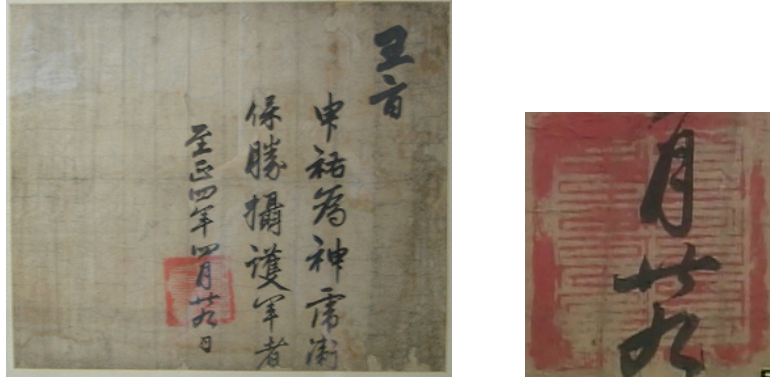
¹⁰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497쪽, 566쪽.

¹¹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 38쪽.

¹²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古文書研究』 31, 2007, 123~125쪽.

¹³ 川西裕也, 앞의 논문(2011), 118쪽.

<도 1> 1344년 신유 고신



駙馬高麗國王印

다음으로 현재까지 朝謝牒, 謝牒, 朝謝文書 등으로 거론된 고려말과 조선초에만 존재하였던 문서에 대한 문제이다. 고려말과 조선초에 발급된 고문서 가운데 동일한 문서군에 속하는 자료가 50여 점에 이를 정도로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물다. 이 시기에 발급된 동일한 문서군으로 분류되는 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 것은 '왕지', '교지'로 불리는 고위 관료에 대한 고신이고¹⁴, 그 다음이 바로 조사문서이다.

고려말과 조선초의 관직 임명문서에 대하여 견해를 제기한 초기 연구자들의 주요 주장을 2011년 가와니시 유야 박사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한 바 있다.

<표 1> 박재우·박준호·야기 다케시의 견해 정리¹⁵

구분	사원기(원간섭기) 이후의 고려	조선초기(경국대전 시행전)
박재우	관교(사품이상 임명문서) + 조사문서(증명문서)	관교(사품이상 임명문서)
	교첩(오품이하 임명문서)	교첩(오품이하 임명문서)

¹⁴ 고려말부터 조선초 세종 연간까지만 발급되었던 '왕지'는 원본과 전사본을 포함하여 대략 60여 점 내외로 파악된 바 있다. (박성호, 「현재 전하고 있는 왕지(王旨)의 진위(眞僞) 고찰」, 『정신문화연구』 120, 2010.)

¹⁵ 川西裕也, 위의 논문, 112쪽.

	+ 조사문서(증명문서)	+ 조사문서(증명문서)
박준호	조사문서(임명문서)	관교(사품이상 임명문서)
		조사문서(오품이하 임명문서)
야기 다케시	관교(재추에 대한 임명문서)	관교(사품이상 임명문서)
	조사문서(일반 임명문서)	조사문서(오품이하 임명문서)

박재우는 관직 임명문서와 조사문서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고려말과 조선초 관원에 대한 임명문서는 관교와 교첩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사첩'은 대간의 서경권이 있는 관원 임명시 서경 결과를 확인시켜준 증명문서일 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박준호와 야기 다케시는 조선초에는 4품과 5품을 기준으로 관교와 조사문서가 각각 임명문서로서 기능하였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나, 고려말 관교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¹⁶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가와니시 유야는 기존 연구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고려말에도 관교가 존재하였고, 조사문서는 고려말과 조선초에 임명문서로서 기능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¹⁷ 심영환은 고려말 변화된 관제 속에서 왕의 직권으로 관원을 임명하면서 서경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려 특유의 '조사'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조선 세조대에 이르러 '고신'으로 이어졌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¹⁸ 이어서 박성중은 '조사'라는 용어 자체에 주목하여 여러 용례와 의미 파악에 집중하였고, '사첩(조사첩)'에 대해서는 임명문서인 직첩과는 별개의 심사 통지서의 성격을 가졌던 문서로 보았다.¹⁹

이렇게 '조사'에 대한 개념 문제, 실제 실물로 남아 있는 조사첩·사첩·조사문서

¹⁶ 각각 박재우, 박준호, 야기 타케시의 위의 논문 참조.

¹⁷ 川西裕也, 위의 논문, 110~117쪽.

¹⁸ 심영환, 박성호, 노인환, 위의 책, 18~25쪽.

¹⁹ 박성중, 위의 논문, 11~13쪽.

로 지칭된 문서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이어지자 박재우는 재차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고려후기 인사문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고려후기의 고신으로는 관교(5품이상)와 교첩(6품이하)이 존재하였고, 고려시대는 전기와 후기에 모두 1~9품에 이르는 모든 관리들에 대해 서경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보한 문서가 '사첩'이었음을 강조하였다.²⁰

이러한 논쟁에 이어 최근 박성호는 추가로 발견된 조사문서 3점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기왕에 알려진 왕지, 교지, 조사문서를 망라하여 조사문서는 『경국대전』 체계 하에서 '문무관 오품이하 고신'으로 명시된 문서의 전신, 곧 고신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였다.²¹

실록의 1432년(세종 14)과 1436년(세종 18) 기사에서 각각 "사품이상고신"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세조대인 1457년(세조 3)과 1466년(세조 12) 기사에서는 각각 "오품이하고신"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경국대전』이 공식적으로 편찬되기 전에도 4품과 5품을 기준으로 고신을 구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국대전』에 수록된 '문무관 사품이상고신식'과 '문무관 오품이하고신식'이 확정되기 전의 조선초기 고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시 말하건대, 선행 연구자들은 왕지 또는 교지 양식의 관교와 조사문서로 양분되었다는 견해와 왕지 또는 교지 양식의 관교와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직첩으로 양분되었다는 견해가 있었다.

조선초기 실록에서 거론한 '오품이하고신'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조에서 계하기를,

"매번 관리를 제수하라는 하비를 내린 뒤에 동·서반 4품 이상의 관교(官敎)를 이조와 병조에 나누어 내려 보내면, 대성(臺省)은 과거에 5품 이하의 조사(朝謝) 예에

²⁰ 박재우, 위의 논문(2013).

²¹ 박성호, 「새로 발견된 김한계, 배임 조사문서와 조선초기 오품이하 고신의 변천」,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2017.

의거하여 서경(署經)하여 이조와 병조로 문서를 보내어 당일로 관교를 모두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준 날짜와 또는 사고가 있어서 곧 나누어 주지 못한 자는 내용을 밝혀서 기록하여 보고하며, 대간에서 영구히 서경하지 않는 자의 관교(官敎)도 내용을 갖추어 봉함하여 계문하며, 5품 이하에게 조사를 내어주는 것[出謝]은 과거의 예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²

위 기사는 1426년(세종 8) 이조에서 왕에게 계문하여 윤험을 받은 내용이다. 조선초 동·서반 4품 이상에게 발급한 관교(왕지 양식의 고신)은 臺省의 서경 없이 바로 발급하였다. 이에 대해 사헌부, 사간원 등에서 태조 대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종 8년에 이조에서 일종의 개선책을 제안한 것이다. 먼저 왕이 4품 이상 관직 제수에 대하여 하비를 내리면, 이를 토대로 관교를 작성하여 문반과 무반에 따라 이조와 병조로 관교를 보내고, 대성에서는 제수 대상자에 대해 "5품 이하의 조사"에 적용하던 서경을 거쳐서 그 결과를 이조와 병조로 통보하면, 통보받은 당일 관교를 제수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 것이다. 다만, "出謝"로 표현한 5품 이하 관원에게 내어주던 '조사(문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유지하게 하였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5품이하 출사"는 곧 5품이하 관원에게 발급한 조사문서를 가리킨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두 기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되었고, 조선초기 오품이하 고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1457년(세조 3) 7월 13일의 기사이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이과吏科와 승음 출신承蔭出身의 작첩爵牒을 봉封하거나 증직贈職하는 따위의 문

²² 『세종실록』 8년(1426) 2월 11일 2번째기사, 吏曹啓: "每除授下批後, 東西班四品以上官敎, 分下吏兵曹, 臺省依在前五品以下朝謝例署經, 移文吏兵曹, 卽日分授, 畢其分授日月及或有故未卽分授者, 辭緣開寫以聞. 臺諫永不署經者之官敎, 亦辭緣具啓封還. 五品以下出謝, 依前例." 從之. (기존의 번역에 다소 오류가 있어 위 번역은 부분부분 필자가 수정하였다.)

첩文牒에는 모두 이문吏文을 사용하는데, 오로지 동반東班·서반西班 5품 이하의 고신告身에서만 이두吏讀를 옛날 그대로 사용하니, 심히 비루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이문吏文을 사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³

위 기사는 1457년(세조 3)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동·서반 오품이하고신을 제외한 여타 관직 임명문서나 증직문서 등에는 이미 문서 작성에 이두를 사용하지 않고 명나라 공문서와 같이 이문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때를 기준으로 오품이하고신도 이두를 배제하고 이문으로 작성하도록 이조에서 왕의 윤허를 구한 것이다.²⁴

최근 추가로 발견된 조사문서 3점을 포함한 총 50점의 조사문서를 분석해 보면, 정확히 1456년(세조 2)과 1457년(세조 3)을 기준으로 문서 양식이 변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1457년(세조 3) 배임 조사문서[고신문서]가 바로 그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더 이상 문서에 이두를 비롯한 기존의 고려말 조선초의 관문서 작성 양식에서 벗어나 순한문투의 이문을 사용한 문서 양식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의 실록에서 언급한 “동·서반 오품이하 고신”의 실체는 바로 당시에 발급된 조사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4. 고신 연구와 고신 제도 연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실물로 전하고 있는 고신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문서의 외적 형태, 문서에 적힌 내용 판독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신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려면 고신이 발급되던 당시의 관료제, 고신 제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²³ 실록 원문은 위의 주18 참조.

²⁴ 박준호, 위의 책, 97쪽; 심영환·박성호·노인환, 위의 책, 24쪽, 74쪽.

가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 고신도 단순히 얘기하면 『경국대전』의 告身조에 대한 내용만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법전의 조문과 실록의 기사만으로는 실물 문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서로서의 고신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신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고, 고신 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고신 문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비단 조선시대 고신과 고신 제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려말 왕지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았지만, 좀 더 나아가 고려 전기 고신과 고신 제도도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되고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려전기로부터 어떤 요인에 의해 고려후기, 조선전기로 고신 제도가 변천되었는지를 지금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전기 고신은 2점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975년 김부 고신>과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1216년 혜심 대선사 고신>은 조선시대 고신과는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김부 고신은 중국의 勅授告身 양식을 수용하였지만,²⁵ 그러나 중국의 制授告身 양식에서 보이는 “主者施行”이라는 문구가 보이는 점, “大匡內議令兼摠翰林 臣 王翮”이 “宣.奉.行”을 단독으로 처리한 점, 문서의 말미에 기재된 관원들의 구성 등은 고려 특유의 제도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²⁶ 그리고 <혜심 대선사 고신>은 김부 고신과는 달리 제수 고신의 양식을 따라 작성되었다.²⁷ 일반 관료가 아닌 승려에게 발급된 고신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당시의 고신 양식과 발급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²⁵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49쪽; 심영환, 앞의 논문, 101쪽.

²⁶ 심영환, 앞의 논문, 103~110쪽.

²⁷ 장동익, 앞의 논문, 102쪽.

<자료 2> 1216년 혜심 고신²⁸

(전단부 결락²⁹)

<謀>, 戒行氷清, 襟靈<玉潔. 早脫>
<煩惱之>縛, <高參覺苑之遊. 不由>
<靈山之>拈花, 得<法眼>藏. 不<暇>
<少林之立雪, 傳>自心燈. 拭明鏡<之光>
<而無>塵可侵, 觀止水之淵<而波浪>
<不>動. 專提祖印, 開示<妙門. 法流>
蒼菴之林, 行副苾芻之範. <淡泊>
<如>瀉水, 洋洋乎盈耳哉. 待<問而>
<撞>鐘, 循循然誘人也. 實<謂三劫之>
<鴻願, 豈>唯<一世之儀鑄.> 雖眞<人>
■無名焉, 遠在兒<孫之香火. 遺>
<命依必>有尊也, 特加緇秩<之不模.>
可特授大禪師. 於戲! 崇眞<所謂爲>
邦, 示賞所以<勸>善. 尊行慕道, 朕
盡禮以命師. 弘法利人, 師乃竭<力>
而護朕. 往諧乃職, 永孚于<法.>
主者施行.

貞祐四年正月 日

<金紫>光祿大夫.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判兵部事 臣 崔(署)

朝散大夫. 尙書兵部侍郎. 充史館修撰官. 知制誥 臣 李(署)

²⁸ 원문의 복원은 장동익, 「慧諶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 1981와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최종적인 교감은 김부 고신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고문서정선』 1에 수록된 방식을 따랐다.

²⁹ 원문서에서 결락된 부분은 『曹溪山松廣寺史庫』와 장동익의 논문에서 복원해 놓은 것이 있어 참고가 된다. 정확한 복원 근거는 알 수 없으나 원문서가 훼손되기 이전의 전사본이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門下 秦后尊羅什之說法 奉 / 待以師禮 隋皇重靈幹之禪 / 定 召主於道場 惟帝王之尊 / 僧 在古今而同軌 苟有離倫之 / 開土 盍頒進律之異恩 禪師慧”

門下侍郎平章事

給事中 玄(草押) 等<言>

制書如右, 請奉

制附外施行, 謹言.

貞祐四年正月 日

制可

<禮>部尚書

<禮>部侍郎

<尚>書左丞

<告>大禪師, 奉被

<制>書如右, 符到奉行.

禮部郎中

主事 朴

令史 韓

書令史 黃

乙亥九月十三日 下

또한 고려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고신과 고신 제도 뿐만 아니라, 고신이 아닌 관료 임명 문서에 대한 연구도 보다 더 심화되어야 한다. 시대와 목적에 따라 箭付, 差帖, 口傳, 傳令 등을 사용하여 관직에 임명한 경우도 연구가 되었지만,³⁰ 큰 틀에서 고신과의 관계 및 해당 문서의 기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고신 문제를 넘어서 인사 제도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政案, 陳省, 政事, 褒貶, 考課 등과 연계하여 전체 인사 체제 안에서 문서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³⁰ 川西裕也, 「고려말기 元 任命箭付 體式의 수용 - 「金天富箭付」의 검토-」, 『고문서연구』 35, 2009; 송철호, 「조선 시대 差帖에 관한 연구 - 17세기 이후의 口傳에 관한 差帖을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35, 2009;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30, 2007.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관직 임명문서를 인사문서라고 거론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인사문서는 고신뿐만 아니라 관료 인사에 관계된 제반 문서를 뜻하는 상위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맺음말

이제까지 간략하게나마 그동안 한국 고문서 학계에서 전개된 고신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경과, 주요 논쟁 사안, 문서 연구와 제도 연구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하였다.

아래는 필자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고려 및 조선시대 고신의 대체적인 흐름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신 연구와 고신 제도 연구는 지금보다 더 심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 아래의 도식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시 그려져야 할 것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기대를 토대로 현재까지의 연구 경과를 새삼스럽게 짚어본 것에 불과하다. 발표자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표 2> 고려~조선시대 고신의 변화 추이

고 려 중 기	[975년 金傳 告身] 勅 云云 主者施行 (이하생략)
	↓ [1216년 慧謹 告身] 門下 云云 主者施行 (이하생략)

↓

고 려 말	[告身] 王旨 某爲某階某職者 年 月 日 [寶]	[朝謝文書] 司上朝謝斜準 司憲府錄事某 某 年某月日名(帖) 某年某月某日下 批 某爲某職 朝謝由出納爲等以 施行 印
	↓	↓

↓

↓

조 선 초	王旨 某爲某階某職者 年 月 日 ↓ 教旨 (徽旨) 某爲某階某職者 年 月 日 [寶]	吏[兵]曹爲朝謝准事 司憲府吏 [兵]房書吏某 某年某月日名關 某年某月某日下批 某爲某職 朝 謝由移關爲等以 合行故牒 須至 故牒者 (이하생략) ↓ 吏[兵]曹爲告身事 某年某月日准 司憲府關該 某年某月某日批 某爲 某職 已經議署關 請照驗 准此 所 據本官告身 理宜出給 爲此 須至 牒者 (이하생략)
-------------	---	---

↓

↓

경 국 대 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 教旨 某爲某階某職者 年 月 日 [寶]	[文武官五品以下告身] 某曹某年某月某日奉 教具官某爲某階某職者 年 月 日 [印] 判書臣某 (이하생략)
------------------	---	---

<참고문헌>

김형수, 「고려 후기 이자수 관직임용자료 4건」, 『국학연구』 12, 2008.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노명호 등,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박성중, 「조사의 사용 의미와 문서식」, 『고문서연구』 42, 2013.

박성중, 『조선 초기 고문서 이두문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박성호, 「현재 전하고 있는 왕지(王旨)의 진위(眞僞) 고찰」, 『정신문화연구』 120,

2010.

박성호, 「새로 발견된 김한계, 배임 조사문서와 조선초기 오품이하 고신의 변천」,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2017.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 2006.

박재우, 「고려후기 인사행정과 인사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62, 2013.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1, 2007.

박준호, 『예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송철호, 「조선 시대 差帖에 관한 연구 - 17세기 이후의 口傳에 관한 差帖을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35, 2009.

矢木毅, 『高麗官僚制度研究』,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8.

심영환·박성호·노인환, 『변화와 정착 : 여말선초의 조사문서』, 민속원, 2011.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30, 2007

정구복 등, 『조선전기고문서집성』,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7.

川西裕也, 「고려말기 元 任命筭付 體式の 수용 - 「金天富筭付」의 검토-」, 『고문서연구』 35, 2009.

川西裕也, 「『이재난고』 신축일력 소재 여말선초 고문서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36, 2010.

川西裕也, 「高麗事元期から朝鮮初期における任命文書体系の再検討」, 『朝鮮學報』 220, 2011.